



강 북 구 의 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11월 09일
(월요일)

북부신문 7면

강북구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 활동 지원 가능해져

구본승·김명숙 강북구의원 경제활동 촉진 조례 공동 발의
“서민경제 어려울 때 경력단절 여성들 힘 되는 조례 제정 기뻐”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구본승 의원과 김명숙 의원.

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위원장(미아, 송중, 번3동)과 김명숙 의원(비례대표)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1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본승, 김명숙 의원은 지난 2일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시 제안 설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

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하며 ‘경제활동 촉진’이란 강북구·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 제3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책수립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정했다. 공동 발의자인 구본승 의원과 김명숙 의원은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힘이 되고 가정에 힘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후 좋은 세부 사업이 수립, 시행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북일보 4면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정

구본승·김명숙 강북구의원 공동발의,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토대

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위원장(미아, 송중번3동)과 김명숙 의원(비례대표)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4일에 개최된 강북구의회 제1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제정되었다.

구본승, 김명숙 의원은 11월 2일에 개최된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시 제안설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였다”며 제안 이유를 말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



▲ 구본승, 김명숙 의원.

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하며 ‘경제활동 촉진’이란 강북구·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제3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책수립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정하였다. 이에 대해 공동 발의자인 구본승의원과 김명숙의원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힘이 되고 가정에 힘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기쁘다. 이후 좋은 세부 사업이 수립, 시행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하였다.